



제296회 정례회
2010.12.15.

2010년도 제6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
전문위원 검토보고

교육위원회 전문위원

2010년도 제6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0년 12월 6일
- 회부일자 : 2010년 12월 8일

3. 제안이유

공유재산의 취득·처분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, 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」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2010년도 제6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가. 취 득

(단위 : m², 천원)

구 분	기관명	사 업 명	수 량	금 액
건 물	충청북도교육청	장애학생 전용체육관 신축(변경)	550	629,603
건 물	청원교육지원청	(가칭) 각리2초등학교 교사 신축	9,954	16,535,063
건 물	보은교육지원청	내북초등학교 교사 이전 신축	4,800	7,919,340
합 계		(3건)	15,304	25,084,006

① 장애학생 전용체육관 신축(변경)

- 사업기간 : 2010. ~ 2011.
- 재산위치 : 청원군 오창읍 유리 403 외

○ 규 모

- 당초계획 : 950m²
- 변경계획 : 1,500m²
- 증 감 : 550m²

○ 소요예산

- 당초계획 : 1,875,490천원
- 변경계획 : 2,505,093천원
- 증 감 : 629,603천원

- 사 유 : 대기실 및 휴게실 3실(270m²), 관람석 162m²,
주변조경 1,000m² 추가 시설에 따른 경비 증가

② (가칭) 각리2초등학교 교사 신축

- 사업기간 : 2011. ~ 2013.
- 신축위치 : 청원군 오창읍 각리 639-1
- 규 모 : 9,954m² / 24학급 794명(2013. 3. 1.자 개교예정)
- 소요예산 : 16,535,063천원
- 사 유 : 인근 과밀학교 해소 및 신규 인구 유입으로 학생수 증가
- 학교설립부지 확보계획
 - 부지면적 : 14,660m²(4,434평)
 - 추정금액 : 21,257,000천원
 - 공 급 자 : 청원군
 - 공급방법 : 무상공급(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)

③ 내북초등학교 교사 이전 신축

- 사업기간 : 2011. ~ 2012.
- 이전위치 : 보은읍 내북면 화전리 5-1 / 현·내북중학교
- 규 모 : 29,804m² / 6학급 52명(2012. 9. 1.자 이전예정)
- 소요예산 : 7,919,340천원
- 사 유 : 내북중학교 기숙형중학교 전환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 이전 신축

5. 검토의견

○ 장애학생 전용체육관 신축 변경의 건은

- 사업예산 확정 이후 신축부지 추가 매입이 지난 9월에 완료됨에 따라 “대기실 및 휴게실 3실(270m²)과 관람석 162m², 주변조경 1,000m²”의 편의시설을 추가 설치하고자 629,603천원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계상한 것으로,
- 장애학생들의 운동 전·후 대기과 휴식을 위한 공간 확보는 꼭 필요한바 장애학생전용체육관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※ 2010. 3. 26. (전)충청북도교육위원회(제238회 임시회)에서 공유 재산 관리계획이 확정되고, 동년 4월 23일 제1차 추가경정 예산에 건축비 1,875,490천원을 반영(제28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) 반면, 기 예산에 반영했던 부지매입비 23,456,000천원은 「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른 무상공급 대상으로 감액 조정

○ (가칭) 각리2초등학교 교사 신축은

-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각리초등학교는 급격한 여건변화와 인구유입에 따라 도내에서 학생 수가 가장 많은 69학급 2,100여명이 재학하고 있는 열악한 교육 여건이므로,
- (가칭) 각리2초등학교 신축비 16,535,063천원을 들여 24학급 800여명을 수용하는 규모로 2013. 3. 1자 개교 예정인바 이러한 제반 여건을 고려할 때 교사 신축은 학생과 학부모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조속히 추진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※ 2009. 10. 30. (전)충청북도교육위원회(제233회 정례회)에서 학교 설립계획이 확정

○ 내북초등학교 교사 이전 신축은

- 건물이 노후화되고 부지가 협소하여 2011년 3월 폐지되는 내북중학교 자리에 6학급 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사를 신축하여 2012. 9. 1.자 이전 예정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, 이에 따른 소요예산 7,919,340천원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계상한 하였는바,

- 동 교사 신축 이전은 해당지역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뿐만 아니라 모은 지역 교육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

※ 2010. 12. 3. 제296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학교 이전 계획안 확정

관계법령발췌

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

10조 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"관리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.

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

제7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(이하 "관리계획"이라 한다)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[매입, 기부채납, 무상 양수, 환지(換地), 무상 귀속, 교환, 건물의 신축·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,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] 및 처분(매각, 양여, 교환, 무상 귀속, 건물의 멸실,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으로 한다.

1.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. 이 경우 기준가격은 토지에 대해서는 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개별공시지가[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(算定)한 금액을 말한다. 이하 "개별공시지가"라 한다]로 하고, 건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「지방세법」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, 건물의 신축·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.

가. 취득의 경우: 20억원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)

나. 처분의 경우: 10억원(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)

2.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

가. 취득의 경우: 1건당 6천제곱미터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)

나. 처분의 경우: 1건당 5천제곱미터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)

[전문개정 2009.4.24]

제13조(공유재산 관리계획)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교육감이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 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·처분하여야 한다. 다만,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 지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<개정 2010.8.6>

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. 다만,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09.2.6]